

인터넷 DB · 콘텐츠 저작권 분쟁 점점 늘어나

연재순서	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2. 사이버상의 음란
	3.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4.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
	5. 사이버상의 저작권
	▶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법적 문제

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저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된 저작권법을 또 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글 /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초고속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인터넷 없는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국내 IT 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법적·사회적 현상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음반시장이 MP3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갑자기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더군다나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한지 며칠 안 되는 영화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고의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느라 수백명이 연구에 몰두하지만, 정작 이를 유료로 구입하는 사람은 드물고 불법 복제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

용, 그리고 노력을 기울인 자의 창작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환경의 도래는 기존의 저작권관련법으로는 더이상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더 이상 산업사회의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IT사회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이 새로운 유형의 부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

기존의 저작권법은 밀레니엄을 맞이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법적 보호의 우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했다.

첫째, 디지털 복제개념을 수용해 아날로그 형태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 개념에 포함시켰다. 즉 기존 저작물을 전자적 기록장치에 디지털화해 저장하는 것도 복제로 규정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복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복제가 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복제는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유발하고 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했으나 디지털 복제는 이 모든 것을 뛰어 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더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다.

둘째, 전송권을 신설해 디지털 저작자는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저작권기구가 요구하는 이용제공권을 입법화한 규정으로서, 기존의 공연, 배포, 방송의 개념과 비교할 때 개별성,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무형성을 특징으로 하며, 배포권, 송신권, 공중전달권이 결합된 권리이다. 전송권은 주문형 쌍방향 송신이 핵심적 요소이다. 다만 LAN을 통한 공유, 동시에 대량으로 송신하는 e메일, 디지털 방식에 의한 다채널 방송과 유료 가입자 방송 등을 전송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이다.

셋째, 디지털 도서관을 통한 정보이용을 신설했다. 즉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은 전자도서관을 통한 일정한 범위의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전자도서관으로 인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서관 외 전송이나 도서관 내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다운로드 방지장치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2003년 개정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 보호 강화

저작권법은 이미 2000년에 대폭 개정됐지만 그것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존의 규정은 디지털콘텐츠로서 보호받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2003년 또 다시 대폭적인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로서 보호했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구성한다는 논리는

유효하지 않다. 창작성 유무를 떠나서 데이터베이스는 더이상 의미 없는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가치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인 경우 정당한 디지털 콘텐츠로서 보호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갱신·검증 또는 보충한 자에게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적절한 권리보호기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타 권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필요한 목적 범위에서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콘텐츠의 공정사용을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해 도서관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침해의 구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책임을 감면하고 있다.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기술적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종전에는 손해액에 관해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000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인터넷을 고려해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한편,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

프로그램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을 갖는 한편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프로

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저작권은 첫째,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둘째,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셋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넷째,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다섯째,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여섯째,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취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으로 복제해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해 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의 구제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위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위반해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은 부정복제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은 수거·삭제·폐기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위의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공지를 하고,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2002년 제정했다.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한다.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 형태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복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전자적 매체 등 유형물

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등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당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전자적 형태로 부가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해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해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법은 정보통신망에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아날로그 형태의 원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주로 보호한다. 3가지 형태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5년간 보호한다. ① 디지털 창작 저작물(예컨대 PC로 작성한 소설)을 온라인사업자에게 복제를 허락함으로써 그 사업자가 e북으로 제작해 서비스할 경우, ② 저작권 있는 소설의 저작자에게서 디지털화를 허락 받은 사업자가 e북을 제작해 서비스할 경우, ③ 저작권이 소멸됐거나 공유로 된 저작물(예컨대 조선왕조실록)을 누구라도 디지털화해 서비스할 경우 등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위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해 전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정보통신망사업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또는 타인의 온라인콘텐츠를 전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침해의 구제

위에서 말한 금지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금지행위로 인해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사처벌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 검토

편집물 DB도 저작권 보호대상

정보를 컴퓨터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개설된 병역특례 취업 인터넷사이트인 '노아미'(www.noarmy.co.kr)는 병역특례 업체들에서 구인 직종·주소 등의 정보를 직접 모아 컴퓨터 파일로 바꿔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유사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는 노아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2001년 12월부터 3개월간 5백 30여개 병역특례업체 구인 정보를 복사해 자신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5일 노아미가 유사 사이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소에서 금전적 피해 84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모두 3,8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라도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선택하고 배열한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설계도 절취 사건

대법원은 디지털 설계도 절취 사건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가 근무하는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용지 2장에 출력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별도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시리얼번호 공개 사건

대법원은 1998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비밀번호(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프로그램에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에 불과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해 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던 개정법 이전의 판결이다. 개정법에 의할 경우 시리얼번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bypass)의 방법으로 회피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시리얼번호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유형들을 적절히 망라해 처벌규정이 유명 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녹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뮤지컬을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국 편집국장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에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12월 극단 현대극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해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물 흐르듯이 연이어 내보내 다운로드(download) 없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빚



은 빅스뮤직 사건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 사건

디지털음악의 MP3파일 복제권과 관련해 음반업체와 MP3폰 업체가 갈등하는 가운데 음반업체와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와도 분쟁이 붙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인터넷기업 네오위즈가 지난달 23일부터 자사 음악 사이트 '쥬크온'을 통해 인기가수 김범수의 4집 음악을 음반 발매도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전곡이 서비스되는 바람에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네오위즈와 아인스디지탈을 절도죄 및 저작권법상 권리침해 죄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 측은 김범수 측과 모든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괄 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로 음원 파일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반업체는 어떻게 발매도 안한 음반을 온라인으로 팔게 했겠냐면서 당시 계약내용은 모바일 컬러링 사용권이었고 음원 유통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태도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MP3폰 - 뜨거운 감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5개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5월 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엄정화, 강타, 코요태 등 인기가수를 비롯해 음반 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동원,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보호장치(DRM)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LG텔레콤에 음원 공급을 일체 중지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 제소, LG전자의 MP3폰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악 저작권 단체는 거리 투쟁을 벌인 데 이어 소비자 고소 등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추가로 밝히고 있어 대립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LG텔레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자 - 불매운동

최근 음악 저작권 단체 등이 인기가수까지 합류해 거리시위까지 불사하



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자 국내 최대 휴대폰 이용자 커뮤니티인 세티즌(www.cetizen.com)이 3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MP3폰 사용자 권리찾기 서명운동'에 총 5,725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적어 참여했다. 세티즌은 서명에 참여한 이들의 총의를 모아 정부기관, MP3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MP3폰 기능제한, MP3파일 가격결정 등 향후 정책 결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적극 고려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요구가 무시되고, 저작권 단체의 의견만 반영되면 저작권 단체 해산 촉구, 음원·MP3폰 불매운동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음악 저작권 단체의 요구만을 수용해 사적 MP3 파일의 음원 재생을 제한한다면 해당 서비스와 단말기의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휴대폰 사용자는 소비자가 무조건 저작권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술 규제를 앞뒤 가리지 않고 음악저작권단체 등이 실력 행사로 무조건 적용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사용자 요구사항의 골자는 음악 저작권 단체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한 음원, 교육용 자료 등을 MP3 파일로 변환해 사적으로 쓰는 것까지 불법복제와 동일시해 음질 제한, 사용기간 제한 등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MP3 음악 파일의 판매 가격도 현재 700~1,000원 수준에서 300원 이하로 낮아져야 할 뿐 아니라, 중복 과금의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MP3폰은 어디로?

정보통신부는 MP3폰 출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음원관리자단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가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음악파일에 대해 3일(72시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초로 문화부, 소비자단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 앞으로 2개월 동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질 제한 문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협의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MP3파일에 재생 시한을 두는 대신 음질을 제한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음질 제한 논의를 2개월 내에 끝내자는 음반업계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MP3폰이 음질 문제 등 소비자의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음악·휴대전화 산업의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